

2017년도 과천시 통합결산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과천시장

2017년도 과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8. 4. 23. ~ 5. 12.(20일)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제갈임주(과천시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노영기(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박정현(세무사)

과천시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①	검사의견서	1
②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과천시 재정 현황	2
	2. 세입.세출 결산	3
	3. 기금의 결산	14
	4. 재무제표의 결산	15
	5. 성과보고서	17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8
③	개선 및 권고사항	20
④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26

1 결산검사 의견서

과 천 시 장 귀 하

2018년 5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과천시 의회로부터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8년 4월 23일부터 2018년 5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7회계연도 과천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과천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과천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제갈임주 (인)

검사위원 노영기 (인)

검사위원 박정현 (인)

2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과천시 재정 현황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세 입 (수 입)	530,268	473,657	523,542
	세 출 (지 출)	302,730	238,061	207,970
	결 산 상 잉 여 금	227,537	235,596	315,572
일 반 회 계	세 입	287,874	288,035	326,264
	세 출	225,245	220,504	190,127
	결 산 상 잉 여 금	62,629	67,531	136,137
특 별 회 계	세 입	75,977	24,062	28,361
	세 출	66,916	13,839	15,537
	결 산 상 잉 여 금	9,060	10,223	12,824
기 금	세 입	166,417	161,560	168,917
	세 출	10,569	3,718	2,306
	결 산 상 잉 여 금	155,848	157,842	166,611

기금을 포함한 20개 전체 회계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과천시 재정규모는 523,542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49,88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규모’는 3,305천원, 지방세 실제수납액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은 1,256천원 임.

결산상 잉여금 315,572백만원은 일반회계의 결산잉여금 136,137백만원,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12,824백만원, 기금의 결산잉여금 166,611백만원의 합계액 임.

일반회계의 결산잉여금 내역은 이월금 29,76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46백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105,328백만원 임.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입잔액 (C=A-B)
합 계	340,134	354,625	205,664	148,961
일 반 회 계	313,335	326,264	190,127	136,137
특 별 회 계	26,799	28,361	15,537	12,824
공기업특별회계	22,952	22,888	13,041	9,847
상 수 도	11,670	11,619	6,424	5,195
하 수 도	8,282	8,276	4,691	3,585
지식정보타운	3,000	2,993	1,926	1,067
기 타 특 별 회 계	3,847	5,473	2,496	2,977
저 소 득	520	520	134	386
의 료 보 호	346	347	325	22
도 시 주 차 장	2,981	4,606	2,037	2,569

회 계 별	현 년 도 채무상환	이 월 액 (D)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	18,051	3,241	9,401	1,046	117,222
일 반 회 계	-	17,521	2,841	9,401	1,046	105,328
특 별 회 계	-	530	400	-	-	11,894
공기업특별회계	-	432	400	-	-	9,015
상 수 도	-	-	236	-	-	4,959
하 수 도	-	432	157	-	-	2,996
지식정보타운	-	-	7	-	-	1,060
기 타 특 별 회 계	-	98	-	-	-	2,879
저 소 득	-	-	-	-	-	386
의 료 보 호	-	-	-	-	-	22
도 시 주 차 장	-	98	-	-	-	2,471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54,62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40,134백만원 보다 14,491백만원이 추가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57.9%인 205,664백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148,961백만원 임.

이중 명시이월비 18,051백만원, 사고이월비 3,241백만원 및 계속비 9,401백만원 과 보조금 집행잔액 1,046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222백만원 임.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313,335	336,518	326,264	827	9,427
결 산 확 인 액	313,335	336,518	326,264	827	9,427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은 326,264백만원이며 예산액의 104%로서 12,929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26,264,265,334	326,264,265,334	-

금고출납계산서와 수납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0 1 7	313,335	336,518	326,264	827	9,427
2 0 1 6	281,359	297,329	288,035	1,094	8,200
증 감	31,976	39,189	38,229	△267	1,22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2016년과 비슷한 96.95%이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16% 증가(38,229백만원)로 326,264백만원이 수납되었음.

불납결손액의 경우 전년도 1,094백만원보다 267백만원이 감소한 827백만원으로 주된 결손사유별 내역은 시효소멸 380백만원, 무재산 262백만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 111백만원 임.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313,335	336,518	326,264	827	9,427
지 방 세	68,587	79,572	72,256	585	6,731
세 외 수 입	39,200	45,194	42,256	242	2,696
지 방 교 부 세	41,669	43,669	43,669	-	-
조정교부금등	61,704	65,930	65,930	-	-
보 조 금	34,644	34,622	34,622	-	-
보존수입등 및 내 부 거 래	67,531	67,531	67,531	-	-

과목별로 세입결산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2%인 72,256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3%인 42,256백만원이 수납되었음.

지방교부세는 13%인 43,669백만원, 조정교부금등은 20%인 65,930백만원, 보조금은 10.6%인 34,622백만원이 수납되었음.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결 산 액	294,971	313,335	190,127	29,763	93,445
결 산 확 인 액	294,971	313,335	190,127	29,763	93,445
차 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일반회계 예산액은 294,971백만원이며 전년도에서 18,364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313,335백만원 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인 190,127백만원 임.

이월액은 29,76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의 경우 기반시설(도로)정비 등 52건 17,521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체육시설조성(도비) 등 12건 2,841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지방하천개수사업(도비) 4건 9,401백만원 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8%인 93,445백만원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 집행 잔액 13,591백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1,069백만원, 예비비 78,617백만원 등 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90,126,742,870	190,126,742,870	-

금고출납계산서와 지출액은 일치함.

○ 이용·전용 및 이체

예산의 이용과 이체에 대해서는 해당내역 없으며, 전용액은 90백만원으로 조직내 부문별 세부사업 전용으로 총 9건 발생하였고, “어린이 안전축제 운영에 따른 행사 지원자 급식비 지원” 사유가 있었음.

○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지출

인건비 지출액은 36,955백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지출액은 19,684백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용은 102,976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에 25,500백만원, 기타회계등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3,069백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 등에 1,943백만원이 집행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137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 29,76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4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5,328백만원으로 결산 됨.

순세계잉여금 105,328백만원은 세입초과금 12,930백만원과 집행잔액 92,398백만원의 합 임.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비율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220,504	313,335	190,127	100.0%	60.7%	-30,377	86.2
일 반 공 공 행 정	48,927	40,180	33,003	17.4%	82.1%	-15,924	67.5
공공질서및안전	1,448	2,299	1,661	0.9%	72.2%	213	114.7
교 육	5,924	6,383	5,897	3.1%	92.4%	-27	99.5
문 화 및 관 광	10,983	18,933	13,194	6.9%	69.7%	2,211	120.1
환 경 보 호	11,702	12,113	10,105	5.3%	83.4%	-1,597	86.4
사 회 복 지	49,031	52,165	49,629	26.1%	95.1%	598	101.2
보 건	3,043	4,135	2,958	1.6%	71.5%	-85	97.2
농림해양수산	4,202	4,535	3,931	2.1%	86.7%	-271	93.6
산업·중소기업	1,104	2,532	1,392	0.7%	55.0%	288	126.1
수 송 및 교 통	22,076	22,727	13,542	7.1%	59.6%	-8,534	61.3
국토및지역개발	20,103	23,215	11,203	5.9%	48.3%	-8,900	55.7
예 비 비	-	78,617	-	-	-	-	-
기 타	41,961	45,499	43,612	22.9%	95.9%	1,651	103.9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 중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49,629백만원 (26.1%), 일반공공행정 33,003백만원(17.4%) 등 이며, 전년대비 증가폭이 큰 부문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1,392백만원(126.1%)이며, 감소율이 두드러진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로 11,203백만원(55.7%) 임.

(3) 특별회계 (직영 공기업 포함)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26,204	30,573	28,360	17	2,195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2,357	22,949	22,887	-	61
상 수 도	11,670	11,656	11,619	-	36
하 수 도	7,687	8,300	8,275	-	24
지 식 정 보 타 운	3,000	2,993	2,993	-	-
기 타 특 별 회 계	3,847	7,624	5,473	17	2,134
저소득주민생활 안 정 자 금	520	672	520	-	151
의 료 급 여 기 금	346	347	347	-	-
도 시 주 차 장	2,981	6,605	4,606	17	1,983
결 산 확 인 액	26,204	30,573	28,360	17	2,195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특별회계 결산 수납액 28,360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156백만원(108.2%)이 초과 수납되었음. 세부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입이 초과 수납되었고 도시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요금 수입이 초과 수납되었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합 계	28,360,583,196	28,360,583,196	-
공기업특별회계	22,887,593,541	22,887,593,541	-
기타특별회계	5,472,989,655	5,472,989,655	-

특별회계 수납액과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은 일치함.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26,720	26,799	15,537	930	10,33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2,873	22,951	13,041	831	9,080
	상 수 도	11,598	11,670	6,424	236	5,010
	하 수 도	8,282	8,282	4,691	589	3,002
	지 식 정 보 타 운	2,993	3,000	1,926	7	1,066
기 타 특 별 회 계		3,847	3,847	2,496	98	1,25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520	520	134	-	386
	의 료 급 여 기 금	346	346	325	-	21
	도 시 주 차 장	2,981	2,981	2,037	98	846

○ 세출결산 개요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26,799백만원이고 지출은 예산현액의 58%인 15,53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30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0,333백만원 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합 계	15,536,823,680	15,536,823,680	-
공기업특별회계	13,040,637,530	13,040,637,530	-
기타특별회계	2,496,186,150	2,496,186,150	-

특별회계 세출결산상 지출액과 금고 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음.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합 계			17,521	2,841	9,401
안전총괄담당관	안전골목길 조성사업(도비)	시설비	367	-	-
안전총괄담당관	안전도시사업	공공운영비	-	4	-
안전총괄담당관	하천개보수	시설비	-	26	-
안전총괄담당관	지방하천 개수사업(도비)	시설비	-	-	4,672
안전총괄담당관	소하천 정비사업(지특)	시설비	-	-	69
안전총괄담당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90	-	500
도시사업단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	-	4,160
도시사업단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사무관리비	11	-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운영	연구용역비	684	-	-
건설과	재해예방 도로정비	시설비	113	-	-
건설과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	59	-
건설과	주암2교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500	632	-
건설과	기반시설(도로) 정비	시설비	2,095	-	-
건설과	강남순환고속화도로	시설비	1,664	84	-
건설과	근린공원(갈현지구)조성	시설비	-	-	-
건설과	GB내 주민지원사업(지특)	시설비	787	-	-
교통과	대중교통은행지원	연구용역비	207	51	-
사회복지과	마을돌봄 나눔터	시설비	38	-	-
사회복지과	경로당 지원	시설비	-	26	-
사회복지과	시립요양원 건립	시설비	30	-	-
교육청소년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지특)	행사운영비	18	-	-
교육청소년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지특) -배달강좌제 운영	행사운영비	4	-	-

예 산 과 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문화체육과	전통사찰보전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	546	-
문화체육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비)	시설비	260	-	-
문화체육과	직장운동부지원	시설비	1,278	-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정비	시설비	-	33	-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국비)	시설비	243	-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595	-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도비)	시설비	-	974	-
환경위생과	폐기물 재활용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	4	-
환경위생과	도로 재비산면지 저감사업(국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20	-	-
환경위생과	폐기물시설운영	민간위탁금	270	-	-
환경위생과	폐기물시설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45	-	-
환경위생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	76	-	-
산업경제과	깨끗한 공원관리	시설비	225	-	-
산업경제과	깨끗한 공원관리	감리비	5	-	-
산업경제과	공원시설물 보강	시설비	76	400	-
산업경제과	공원시설물 보강(도비)	시설비	260	-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	5	-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설비	878	-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감리비	32	-	-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도비)	사무관리비	1	-	-
산업경제과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도비)	민간위탁금	199	-	-
산업경제과	산림보호유지운영	사무관리비	125	-	-
산업경제과	산림보호유지운영	시설비	105	-	-
산업경제과	등산로 정비(도비)	시설비	100	-	-
정보통신과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	연구용역비	60	-	-
정보통신과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사무관리비	3	-	-
정보통신과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전산개발비	18	-	-

예 산 과 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회계과	청사 시설물 개선	시설비	1,313	-	-
회계과	청사 시설물 개선	감리비	54	-	-
회계과	공용주택 관리	시설비	841	-	-
회계과	공용주택 관리	감리비	32	-	-
회계과	공용주택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0	-	-
회계과	공공시설물	시설비	1,437	-	-
회계과	공공시설물	감리비	63	-	-
총무과	구내식당, 헬스장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5	-	-
보건소	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	316	-	-
보건소	보건소 청사관리	감리비	3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국비)	시설비	441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국비)	감리비	8	-	-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 관리	시설비	300	-	-
정보과학도서관	4차 산업시대 과학인프라 구축	시설비	300	-	-
정보과학도서관	4차 산업시대 과학인프라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20	-	-

특별회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회계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합 계			530	400	-
도 시 주 차 장 사 업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연구용역비	98	-	-
상 수 도 사 업	결 산 감 사 수 수 료	사무관리비	-	10	-
상 수 도 사 업	비 상 용 급 수 차 제 조 구 매	시 설 비	-	226	-
하 수 도 사 업	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공사	시 설 비	310	-	-
하 수 도 사 업	하수처리장지하화기본구상용역	시 설 비	102	-	-
하 수 도 사 업	G B 관 리 계 획 변 경 용 역	시 설 비	20	-	-
하 수 도 사 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	연구용역비	-	157	-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결 산 감 사 수 수 료	사무관리비	-	7	-

3. 기금의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82,474	8,631	10,009	1,379	91,105
통합관리기금	75,368	139	1,066	927	75,506
공공부조기금	3,149	-27	54	81	3,122
재난관리기금	2,004	458	603	145	2,46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3,882	898	1,355	457	4,780
옥외광고정비기금	100	17	53	35	118
지역발전기금	16,368	139	139	-	16,507
사회복지기금	11,021	-7	174	181	11,014
양성평등기금	3,123	-15	49	64	3,108
교육발전기금	25,510	257	257	-	25,767
과천축제육성기금	15,138	-90	238	329	15,048
체육진흥기금	2,153	-26	32	58	2,127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	7,043	7,043	-	7,043
식품진흥기금	26	-17	12	29	9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결산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 미포함

2017년도 말 기금 현황은 통합관리기금 1개, 법정관리기금 4개, 자체기금 8개로 총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7개의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음. 이들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91,105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8,631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이 주요 수입원임. 본년도 기금 사용액은 1,379백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음.

4. 재무제표의 결산

2017회계연도 과천시외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음.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883,694	1,811,862	71,832	4.0
I. 유 동 자 산	308,210	226,402	81,808	36.1
II. 투 자 자 산	4,182	5,156	(974)	(18.9)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66,421	164,977	1,444	0.9
IV. 주 민 편 의 시 설	538,817	545,431	(6,614)	(1.2)
V. 사 회 기 반 시 설	861,345	865,036	(3,691)	(0.4)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719	4,860	(141)	(2.9)
부 채	9,938	8,694	1,244	14.3
I. 유 동 부 채	2,719	2,940	(221)	(7.5)
II. 장 기 차 입 부 채	-	-	-	-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7,219	5,754	1,465	25.5
순 자 산	1,873,756	1,803,168	70,588	3.9
I. 고 정 순 자 산	1,570,031	1,576,383	(6,352)	(0.4)
II. 특 정 순 자 산	93,291	84,714	8,577	10.1
III. 일 반 순 자 산	210,434	142,071	68,363	48.1

2017회계연도 말 과천시외의 자산은 1조 8,836억 원으로 전년도 1조 8,118억 원보다 718억 원(4.0%)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임.

2017회계연도 말 과천시외의 부채는 99억 원으로 전년도 87억 원보다 12억 원 (14.3%) 증가하였는데,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의한 것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7	2016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128,898	129,067	(169)	(0.1)
가. 사업총원가	152,295	148,577	3,718	2.5
나. 사업수익	23,397	19,510	3,887	19.9
II. 관리운영비	45,744	45,714	30	0.1
III. 비배분비용	8,904	13,537	(4,633)	(34.2)
IV. 비배분수익	18,283	10,546	7,737	73.4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65,262	177,771	(12,509)	(7.0)
VI. 일반수익	236,038	208,643	27,395	13.1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70,776)	(30,871)	(39,905)	129.3

과천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1,522억 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33억 원을 차감한 1,289억 원이며,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 사업은 ‘시정지원’ (87억 원)과 ‘청소관리’ (16억 원) 임.

또한, 2017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79억 원과 경비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94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151억 원, 기타수익 31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7회계연도 과천시의 재정운영결과는 (-)707억 원으로 전년도의 (-)308억 원 보다 399억 원(129.3%)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배분수익, 일반수익이 각각 77억 원, 273억 원, 증가하고, 비배분비용이 각 46억 원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순원가가 1,250억 원(7%) 감소하였고 일반수익이 273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5. 성과보고서

과천시 는 본 회계연도의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1개) - 정책사업목표(47개) - 단위사업(12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달성률 (A/B)
계	21	47	79	58	21	73
의회사무과	1	1	2	0	2	0
기획감사실	1	1	3	2	1	67
주민생활지원실	1	4	6	6	0	100
안전총괄담당관	1	2	5	5	0	100
도시사업단	1	1	0	0	0	-
도시정책과	1	2	2	0	2	0
건설과	1	1	3	3	0	100
건축과	1	2	3	2	1	67
교통과	1	1	3	3	0	100
열린민원과	1	2	3	3	0	100
사회복지과	1	5	8	6	2	75
교육청소년과	1	2	5	4	1	80
문화체육과	1	5	5	4	1	80
환경위생과	1	5	6	2	4	33
산업경제과	1	5	6	5	1	83
정보통신과	1	1	3	2	1	67
세무과	1	1	3	2	1	67
회계과	1	2	6	5	1	83
총무과	1	2	4	3	1	75
보건소	1	1	1	0	1	0
정보과학도서관	1	1	2	1	1	50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3,756	983	120	4,619
일 반 회 계		3,429	822	1	4,250
특 별 회 계		327	161	119	36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	-	-
	상 수 도	-	-	-	-
	하 수 도	-	-	-	-
	지 식 정 보 타 운	-	-	-	-
	기 타 특 별 회 계	327	161	119	369
	저 소 득	327	161	119	369
	의 료 보 호	-	-	-	-
	도 시 주 차 장	-	-	-	-
	기 금	-	-	-	-
	통 합 관 리 기 금	-	-	-	-
	공 공 부 조 기 금	-	-	-	-
	재 난 관 리 기 금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	-	-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	-	-	-
	지 역 발 전 기 금	-	-	-	-
	사 회 복 지 기 금	-	-	-	-
	양 성 평 등 기 금	-	-	-	-
	교 육 발 전 기 금	-	-	-	-
	과 천 축 제 육 성 기 금	-	-	-	-
	체 육 진 흥 기 금	-	-	-	-
	식 품 진 흥 기 금	-	-	-	-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19백만원으로, 각각 일반회계 4,250백만원, 특별회계 369백만원 임.

(2) 채무

- 해당사항 없음

(3)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250,063	14,872	12,205	1,252,729
행정자산	소 계	1,242,745	14,872	10,140	1,247,476
	공 용 재 산	183,388	817	2,729	181,476
	공 공 용 재 산	1,019,756	14,055	7,411	1,026,399
	기 업 용 재 산	39,395	-	-	39,395
	보 존 재 산	206	-	-	206
일 반 재 산		7,318	-	2,065	5,253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2,666백만원이 증가한 1,252,729백만원 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GB해제지역 내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토지매입 및 사기막골 어린이공원, 삼부골 소하천 정비공사 부지 매입 등 이며, 감소내용은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및 제2경인고속도로 편입보상(육상부 숙소) 등 임.

(4) 물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수 량	687	22	12	697
금 액	7,572	289	145	7,716

물품 결산액은 신규취득 289백만원과 매각·폐기 1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4백만원 증가한 7,716백만원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으로 확인됨.

3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금 과오납반환액 구분 관리

전년도 세입금 과오납반환액 구분 관리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 경기도 회계과-19590(2017.6.1)에 의거 『2017 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의견으로 반영되어 사유별 종류가 4종에서 7종으로 변경되어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오납환급액의 34.6%(1,182,268천원)을 차지하는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금반환액이 기타로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은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타항목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스템 개정을 요청하여 사유별 종류를 추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예산편성 후 미집행

세무과 예산편성 된 세외수입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예산현액은 4,565천원인데 이 금액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세외수입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그 지출액은 집행 잔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3. 시설관리공단 사업비예산책정의 체계화

전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결산 검사시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대부분 경상적인 비용이며 지출내역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2차 추경의 금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이가 1,079백만원(전년도 815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지원예산액 전체를 비교하여도 집행잔액 1,124백만원(전년도 1,04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의 비율이 2%미만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민간위탁기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과천시지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센터장에게 급여 성격의 수당을 인건비가 아닌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용도의 사용과 월정액 지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비롯한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시장은 행정권한을 위탁할 때 수탁기관에게 수탁사무 처리지침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센터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편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과천시는 수탁기관이 정확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지켜 운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시달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현재 센터는 관리주체가 교통과와 사회복지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센터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5.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가정 지원 39,000천원 불용처리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가정 지원 예산 39,000천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 청소년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이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과천시가 신설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결과 ‘동의’ 결정된 사업입니다.

과천시는 당초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시 지원 대상을 교육급여 지급기준과 동일한 ‘중위소득 50% 이하’로 명시하였으나, 지급 적용은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13조 제3항의 2에 규정된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 ‘다문화·한부모·조부모·소년소녀 가정’까지 기준을 강화해 중복 제한함으로써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비 지급은 현금지원으로 경제적 소득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 제3항의 사회적 배려 대상가정은 우선 지원 가능한 조항일 뿐 그 외 대상에 대한 배제조항이 아닙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천시는 2017년 12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등이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수혜 대상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6. 지출부의 표기내용 개선

지출부의 기록사항 중 거래처명에 대한 내용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업무추진비 포함) 거래처명을 카드회사명으로 기록해 실제 거래업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업체는 최종 채주명으로 기록할 것을 권합니다. 전 부서의 일관된 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출품의등록 전산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도 병행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7.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특별회계 당해 연도 정산 처리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은 년도폐쇄기 도래 전(12월말)까지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2015년, 2016년 사업기간의 정산과 반납이 2017년도에 이루어져 2017년 기타영업외수익이 120,397,990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고 그 금액만큼 2015년, 2016년의 순세계 잉여금이 과소 계상되어 결산과 회계처리가 모두 3년도에 걸쳐 부정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8. 세부사업 분류조정

건축과 예산편성에 있어 건축물관리(단위)의 세부사업인 건축물 단속의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 72,500천원 중 실제 건축물 단속관련 비용예산은 400천원뿐이며 대부분 운영수당,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로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분류를 하는 목적은 성격에 따라 대표적인 비용단위로 구분하기 위함이며 결산은 실제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별도 구분함에 따른 실익이 없다면 세부사업명을 건축물관리로 하는 것이 좀 더 정보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 어린이 놀이터 관리문제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산업경제과(공원 소재 놀이터)와

건축과(공원이외 놀이터)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축과 관리 놀이터는 총 10개소이며 이 중 음수대가 있는 놀이터는 1개소입니다. 해당 음수대는 지난 1월에 수도꼭지 고장으로 1년간 방치되다 11월에야 수리되었으며 동절기인 관계로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2018년부터 다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먼저 집행에 따른 후순위로 책정됨에 따라 하반기에나 이를 발의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예산이 1,308천원이 남았고 음수대 수리비용이 440천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우선순위를 따질 정도의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중 음수대가 있는 놀이터는 1곳 뿐 이므로 음수대관련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에 어린이놀이터를 현재와 같이 관리주체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할 수 밖에 없다면 좀 더 유연한 예산의 집행으로 시설의 이용목적에 맞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적절한 집행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과천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지정 용역’은 진행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

첫째, 용역의 타당성입니다. 상기 용역은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의한 심의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위원회 심의과정이 생략된 채 예산이 편성·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공식적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용역의 목적인 과천시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는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6년 2월 15일 과천시는 이 민원에 대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하고 그 법적 근거와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정책적 판단을 끝낸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용역예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편성·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용역 결과의 품질 평가와 감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6년 과천시는 ‘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환경과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고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과 서식환경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후 보호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보호구역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산업경제과-11031, 2016.2.26.)

그러나 과천시는 그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호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기존 보호구역이 부적절하다는 용역 결과에 대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준공계를 수용했습니다.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의하면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용역이후 진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천시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대체후보지를 결정하고 그 토지 관리자인 서울대학교에 협의요청(환경위생과-32167)한 결과 대체후보지 승낙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자산운영과 2523. 2017.11.10) 과천시는 이후 보호구역 재지정안 공람공고 실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공고문 게시 협조 공문 발송, 환경부장관 대상 재지정에 관한 협의요청을 시도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을 위해서는 동일 면적 이상의 대체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재지정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 있으니 사업 중단을 권고합니다.

11. 이월 사업의 미집행

녹지조경 중 공원시설물 보강 사업관련 시설비는 지출되었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된 반면 감리비는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사관련 감리비는 시설공사 관련 필수 비용이므로 지출되거나 이월 될 뿐 전체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되었습니다.

12.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 계약 방식의 개선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의사)은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나,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2항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공개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2014년 12월 최초 체결된 계약으로, 2014.11.24 모집공고 결과 기존 근무자를 포함해 2명이 응시해 새로운 응시자가 면접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아 채용되었고 이후 3년째 계약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대행업무의 범위나 대행자의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지, 「지방계약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계약방법을 규정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약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공개 모집은 기본입니다.

둘째, 면접내용 및 평정요소가 면접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표들로서 합리적,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 모집 절차 없이 계약연장 가능한 조건도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도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비합리적 평가지표, 공개모집의 원천적 차단, 영구적 재계약이 가능한 현 조례 시행규칙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4조 제2항의 계약기간과 절차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세입금 과오납반환액 구분 관리

현행 과오납반환액의 경우 착오부과, 이중납부, 기타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액의 97.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실효성이 없으며 기타의 중요한 부분(국세경정에 의한 부분 등)을 별도로 구분한다면 관리목적상 구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시스템 상에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스템 개정을 요청하여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과천시 의견 반영 경기도 회계과-19590(2017. 6. 1.)호에 의거 『2017회계연도 결산 작성 통합기준』 개정의견으로 제출한 결과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제7호 서식 “세입금 환급현황”의 사유별 종류가 4종에서 7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시설관리공단 사업비예산책정의 체계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는 대부분 경상적인 비용이며 지출내역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2차 추경의 금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이가 815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지원예산액 전체를 비교하여도 집행잔액 1,04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 시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2016년 대행사업비 총16,402백만원 중 집행잔액 1,044백만원은 6.37%로 예비비가 없는 공단 예산구조를 감안할 때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은 아니나, 집행 잔액 및 낙찰 잔액의 감편성 없이 2차 추경을 하여 예산과 지출액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추후는 본예산 편성 뿐 아니라 마무리 추경 예산 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3. 장애인 복지관 운영의 건

장애인복지관은 도비 70백만원 시비 2,110백만원의 예산으로 도 예산비율이 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내 모든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는 도비는 복지관 1개소당 70백만원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근 3개시(안양, 의왕, 성남)와 비교하면 과천시(총인구수, 장애인구수)에 비하여 과도한 시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실례로 의왕시의 경우 인구는 과천시의 2.5배 장애인인구로는 3배이나 예산은 과천시(21.8억)가 의왕시(15.9억)보다 37%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지방이양사업으로 실질적인 비용은 시, 군에서 집행함에도 국고예산은 지원되지 않으며 경기도에서도 생색내는 정도의 예산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는 점진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며 지식정보타운 준공 이후에도 현 수준이내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인구 예측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계획 및 예산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인권신장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천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는 단순히 인구 및 예산 비교만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며,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 보육사업 예산에 관한 건

아동 및 보육예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비의 10%만을 교부받았으며 나머지 예산은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하였는데 2017년에는 교부단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0%를 보조받아야 하나 교부통지가 예산반영 시점 이후(2016년 12월 30일 통지)에 이루어졌으므로 2017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금액은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지원사업, 누리과정차액보육료,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특수

근무수당 등 많은 부분에서 발생(확인금액만 627,265천원)하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
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보조비율 상향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보육예산의 도비 보조비율이 상향 교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관련부서 및
우리시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여 2018년 아동 및 보육예산 도비 보조사
업 보조비율이 30%로 편성 되었습니다.

5. 직장 운동 경기부(육상부)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건

과천시 1986년도 시 승격 당시에 직장운동경기부로 육상부를 창단(현원:10명)하
여 매년 1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엘리트 체육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우수 스포츠 인재를
통한 국가 스포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별로 직장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과거의 엘리트스포츠 육성 접근방식으
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직장
운동 경기부가 시대여건과 환경변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지역 스포츠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과천시 육상직장운동부는 재능기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회가 비교적 적고 운동
하기 좋은 9~11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상의 기본 운동을 놀이 형식
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곳 중 3곳이 참여(관문초등학교는 학교에 의한 사유로 일정변경)하였
으며 등교 전 시간을 활용, 학교별 1회 40여명(주중2회)이 참여하여 총 52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 참여임에도 많은 관심을 받아 꾸준하게 학생들이 참여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학생에서 더 나아가 시민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진행
하여 육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천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 직장운동부(육상)는 2017년 연중 13개의 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8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4개 수상

6. 「과천축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한 대규모 주민참여 워크숍 진행용역」에 관한 건

「과천축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시민참여 워크숍 진행용역」은 사업비 21,340천원, 기간 2016. 9. 22. ~ 11. 25.(64일)으로 (주)쿠파실리테이션과 계약된 것입니다. 용역비 집행시 지출관련 서류 등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착수보고서 상 계약명, 성과보고서 등 계약명이 동일하지 않으며, 애초 목표인원 100명임에도 불구하고 2016. 11. 5.(토) 참여인원 56명 5시간 원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용역 기간도 9. 22. ~ 12. 5.(7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거리예술축제를 진행하는 안산의 예를 들자면 경기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 예산으로 안산거리예술축제 30년을 목표로 4일간(3일간 심포지엄, 1일 클로징 파티) 국내외 유명 축제 감독(숙박과 항공비, 연사비 포함)과 예술인, 시민 700여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행정력과 예산의 효율성이 지극히 비교됩니다.

축제의 방향성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용역의 방향과 비용, 기간 대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용역 진행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관련, 계약명 변경은 과천축제 이사회로부터 최근 1 ~ 2년 사이 동일 목적의 용역이 진행된 것을 지적받아 사전설명회 및 의회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향후 유사한 용역이 있을 경우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7. 시승격 30주년 기념예술행사 〈뮤지컬 갈라 콘서트-비상〉 ※ 수범사례

시승격 30주년 기념예술행사는 3억원 본예산이 행사시기의 중복성과 과천시 5개 재건축 동시 추진으로 인한 민심의 피해 이유로 삭감되었으나 추경 1억 5천만원 승인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당초 시민회관 옆 잔디마당 가수초청 무료 공연에서 뮤지컬 갈라 콘서트 유료공연으로 변경하고, 본예산의 절반예산으로 국내 뮤지컬 전문 기획사 자문으로 예산 절감 2회, 공연 관람객 1,858명 만석,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뮤지컬의 하이라이트를 국내 최정상의 팝페라 & 뮤지컬배우들과 과천시립교향악단의 협연을 통해서 최상의 공연을 펼쳐 시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술 공연 관람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유료공연(과천시민 5,000원, 일반인 20,000원)으로 추진 한 점 또한 바람직한 사례입니다.

8. 2016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과천시 홍보관 운영

예산 42,000천원으로 2016. 4. 15. ~ 4. 17.(3일간) 참여하였으며, 1일 평균 550명 부스 방문 체험으로 총 1,600여명 참여하였습니다. 최우수 홍보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관내 주요관광 기관인 국립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공원, 렛츠 런 파크, 서울 랜드 등 주요관광지와 협력하여 부스를 운영하고 기관별 입장권 협조를 통해서 효율성을 더 높여주시기 바라며, 이벤트 운영 시 제공한 기념품인 친환경 메모지, 머그컵, 추사부채, 추사 스카프 외에도 과천을 대표할 만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2017년에는 ‘제2회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석하여 과천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AGA 기관들과 협조하여 각 기관의 홍보 리플릿, 입장권, 기념품 등을 관람객들에게 배포하여 과천관광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과천 8경, 무동답교놀이, 과천 관내 관광기관들을 형상화 한 관광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디자인을 입힌 관광 상품(에코백, 파우치, 물병, 손거울, 마우스패드)을 제작하여 향후 과천 관광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9. 유도구역(굴다리 시장) 환경 정비

유도구역(굴다리시장) 환경정비 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179,000천원이었으나, 전기시설관리 및 노점상 정비 사업에서 총3회 62,000천원의 예산전용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구역의 성격상 시 행정 방침을 불법 노점상 자연소멸로 했었으나 도보확보, 위생문제, 미관상 문제로 정비하게 된 배경이 있으며, 예산 심의 과정과 4·5단지 주민들과의 갈등 등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예산임을 감안할 때 62,000천원 예산전용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부담스러운 증액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전용이 아닌 정확한 정책적 판단과 현장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적으로 집행이 필요합니다.

⇒ 당초 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나, 여건 변동에 따라 부득이 예산전용이 발생한 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 및 예산편성·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시공사 (주)양지건설과 248,816천원에 계약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 발생으로 추후 260,752천원으로 계약 변경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신규 추가, 통행자 안전 확보 및 우수 유입 차단을 위한 샌드위치 패널 설치 추가, 전실 내부 벽 유리·창틀 부분을 MDF 판넬·인테리어 필름 변경 설치 등이었으며, 이러한 사유는 시공 경험이 다수였을 경우 당초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었을 사안들로 설계변경이 불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공일 또한 2016. 9. 10.에서 2016. 11. 14.로 변경되었으며, 그 사유는 관급자재 알루미늄 창호틀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이었습니다. 준공 이후 엘리베이터 기계 부분에 대하여 3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나, 현재 고장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달청 등록 중소기업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나, 너무나 열악한 중소기업체이다 보니 시설에 잦은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공 시 경험과 하자보수에 문제가 없는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 현재 공사 중인 시청사 본관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품질이 우수하고 AS가 좋은 국내 대기업 생산 엘리베이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시공 시 철저히 감독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 통합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오류

당해년도 재정상태표의 자산 중 주민편의시설 ‘박물관및미술관’에 9,47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사박물관 토지만 회계처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등 또한 ‘박물관및미술관’으로 표기하여야 하나 현 재정상태표에는 ‘문화및관광시설’과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계정 분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정을 재분류하여야 합니다.

⇒ 추사박물관의 건물 등을 e호조 시스템상 ‘문화및관광시설’에서 ‘박물관및미술관’으로 재분류한 후 2017회계연도 재무결산 재정상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12. 도시주차장특별회계 미회수채권에 대한 관리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다음년도 이월액이 납세태만을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당년도 및 이월액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회계의 특성상 당년도발생액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진행되나 지난연도 이월액은 연도별로 회수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 회수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채권으로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큼니다. 시에서는 차량의 매각 및 폐차 시 회수되므로 회수는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로 지난연도 수입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760백만원에 이르므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연령분석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채권의 회수상태에 대해서도 분석하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7년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교통과 -50847 (2017.8.2.)〕하여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이월체납액 7%를 감소시켰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기간 : 2012. 1. 1. ~ 2016. 12. 31.
- 발 송 일 : 2017. 10. 13.
- 징수금액 : 150백만원

이월 체납액		체납감소율
2017.8월 기준	2018.3월 기준	
2,175백만원	2,029백만원	7%

13. 이월결손금 과대 계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상태표 상 표기된 자본잉여금 중 국고보조금 5,200천원은 약품비 보조(조류대응 정수비)로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보조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닌 수익적 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당기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항목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이월결손금이 5,200천원 과대계상 되어있습니다.

⇒ 2017회계연도 재무상태표 작성 시 자본잉여금의 국고보조금 5,200천원을 감하고 전기 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였습니다.